

# 고용동향 브리프

2020

Vol.3

##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 및  
증가 요인 분석

## 02

통계포커스  
노동시장 변동 추이와 코로나19 확산

#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 및 증가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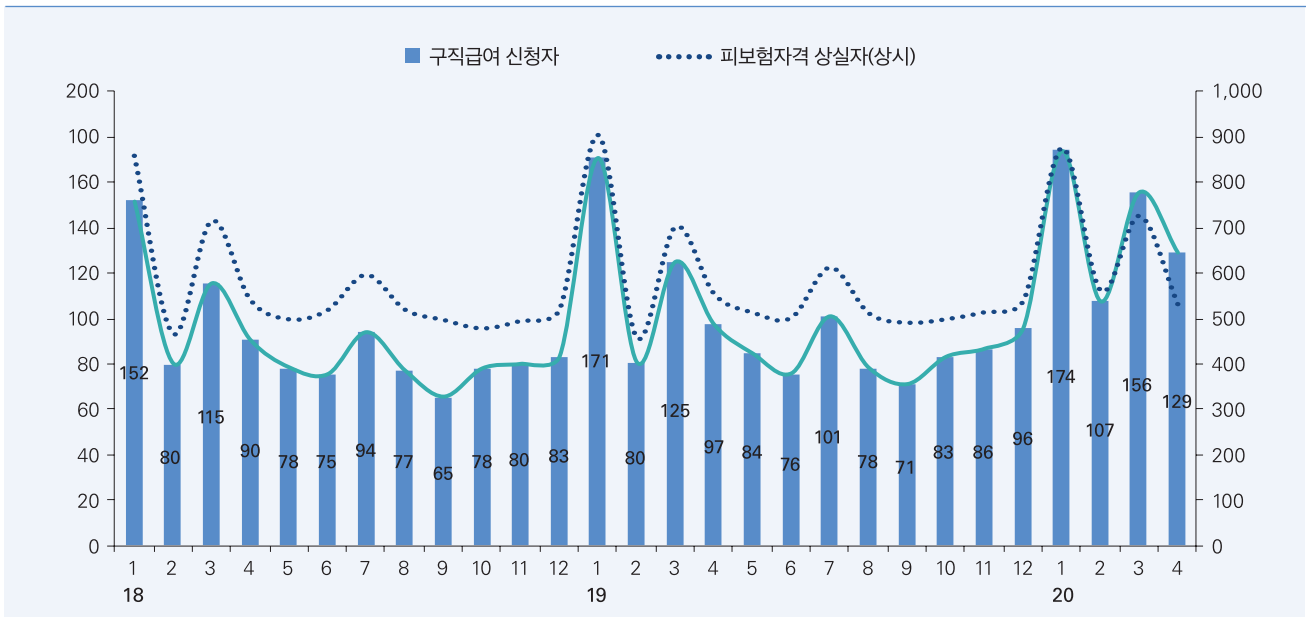
윤정혜\*

## 01 서론

- 연간 구직급여 신청자 추이는 보통 상실자가 급증하는 1월에 신청자 규모가 가장 크고 3월과 7월에 반등하는 형태를 보임
  -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구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가능하고, 보통 고용계약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1월, 3월, 7월에 상실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
  - 2020년 4월 현재까지 이전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가 이전과 다르게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 특징과 증가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그림 1 구직급여 신청자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jeong76@keis.or.kr)

## 02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

- 2020년 4월 기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한 실업자는 12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9% 증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실업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구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거리두기(3.22~5.5)로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이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세는 3월보다 확대된 모습
  - 전년과 비교하여 업무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세는 4월 들어 더욱 확대되었음<sup>1)</sup>
  - 4월은 전 기간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은 달로, 구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취업 경로가 막힌 구직자들의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sup>2)</sup>

표 1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

(단위: 명, %, 전년동월대비)

		구직급여신청자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증감	증가율					
2019년	1월	171,051	19,316	12.7	151,254 (88.4)	19,797 (11.6)		
	2월	80,425	534	0.7	69,860 (86.9)	10,565 (13.1)		
	3월	125,006	9,536	8.3	116,200 (93.0)	8,806 (7.0)		
	4월	97,159	6,889	7.6	90,260 (92.9)	6,899 (7.1)		
2020년	1월	174,079	3,028	1.8	156,966 (90.2)	17,113 (9.8)		
	2월	107,472	27,047	33.6	94,361 (87.8)	13,111 (12.2)		
	3월	155,792	30,786	24.6	143,649 (92.2)	12,143 (7.8)		
	4월	129,106	31,947	32.9	118,748 (92.0)	10,358 (8.0)		

| 주 | 1) ( )는 구직급여 신청자 중 비중임

2) 구직급여 신청자 중 자영업자는 제외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 2020년 4월은 21대 국회의원 선거(4.15), 부처님오신날(4.30)로 2019년 4월(22일)과 비교하여 업무일이 2일 감소하였음. 2월(20일, 3월1)과 3월(22일, 2월1)의 경우 업무일 증가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4월 신청자의 증가세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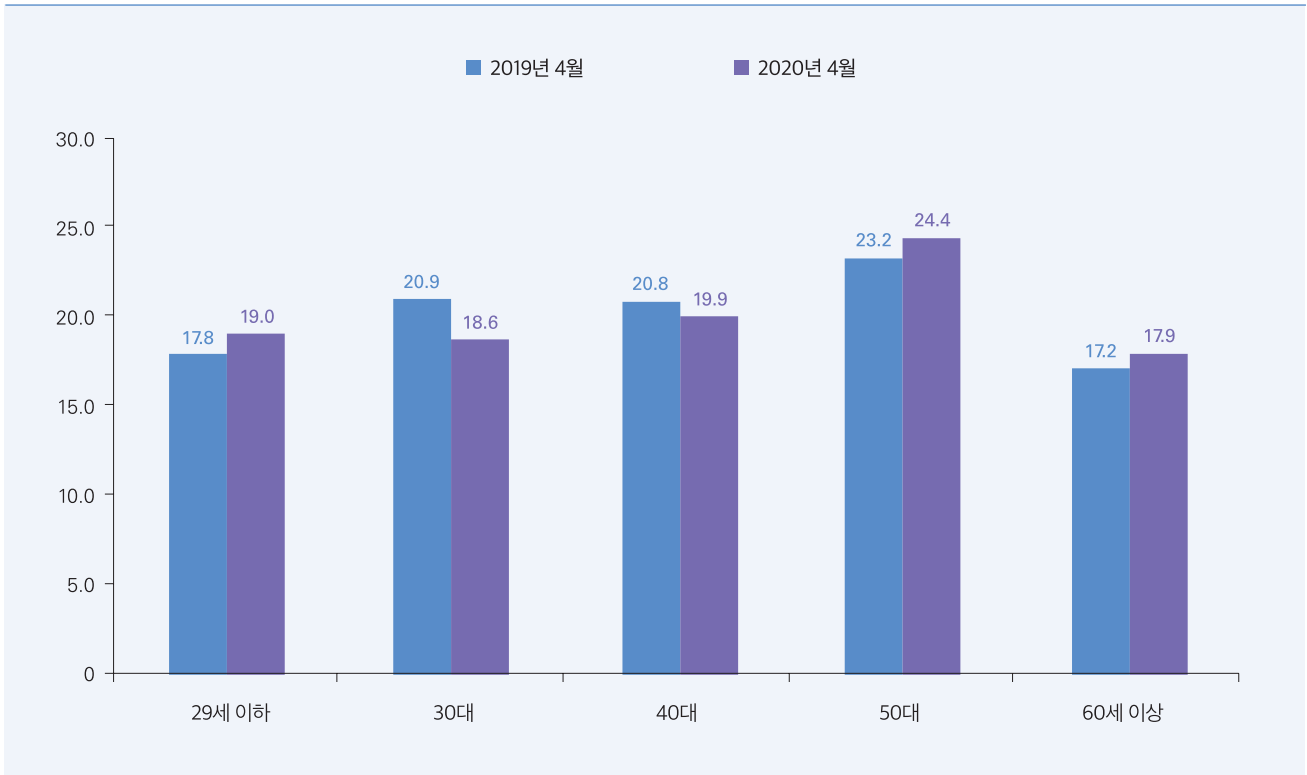
2) 2020년 4월 기준 워크넷 신규구인인원은 12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3월(-24.5%)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구직급여 신청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청년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

- 2020년 4월 구직급여 신청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50대가 24.4%로 가장 많고, 40대 19.9%, 청년(29세 이하) 19.0%의 비중을 보임
-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30~40대 비중은 감소하고, 청년층과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

그림 2 구직급여 신청자의 연령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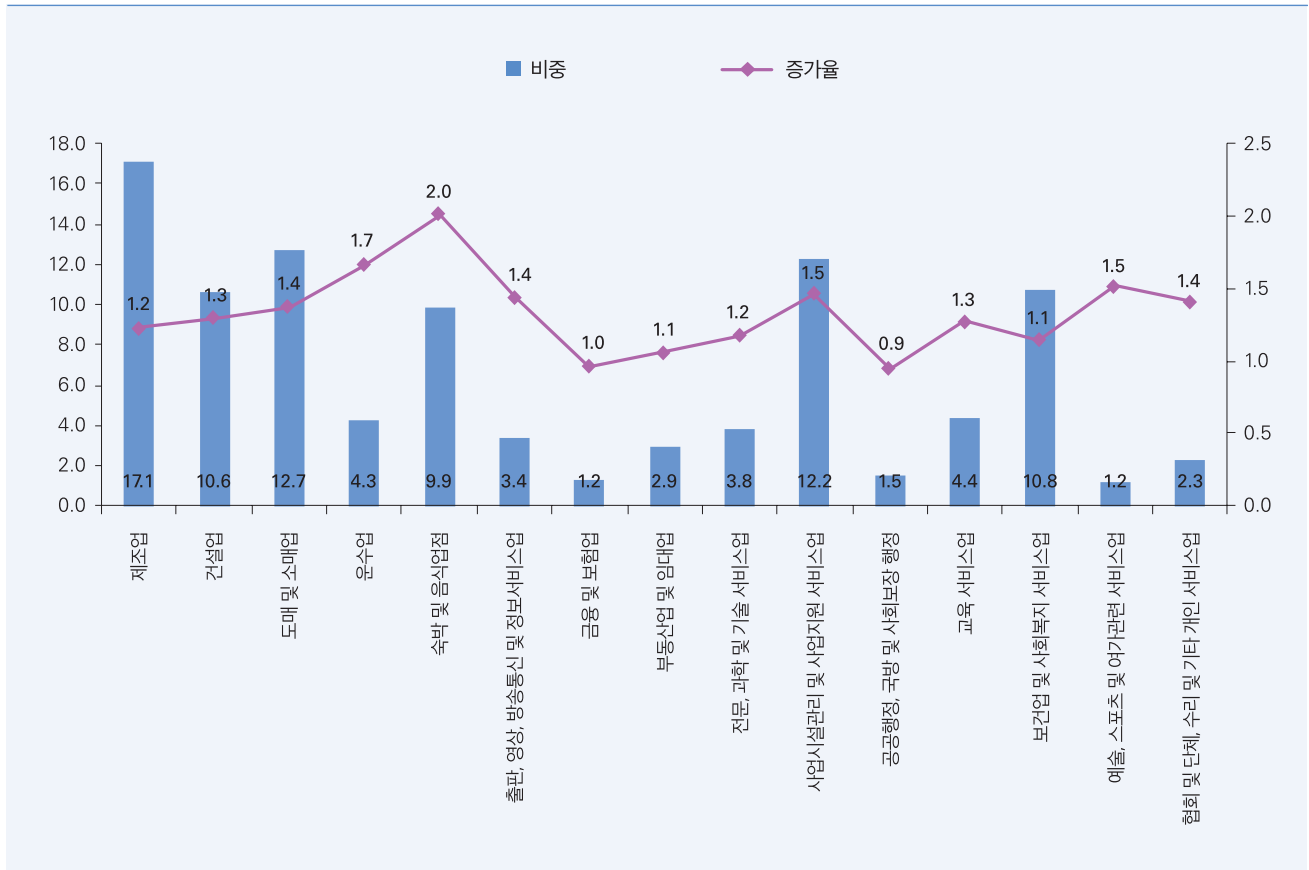
| 주 | 구직급여 신청자 중 자영업자는 제외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
  - 구직급여 신청자의 산업별 비중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구직급여 신청자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그림 3 구직급여 신청자의 산업 분포(2020년 4월)

(단위: %, 배, 전년동월대비)



| 주 | 1) 구직급여 신청자 중 자영업자는 제외

2) 산업 비중이 1% 미만인 산업은 표시하지 않았으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9차 분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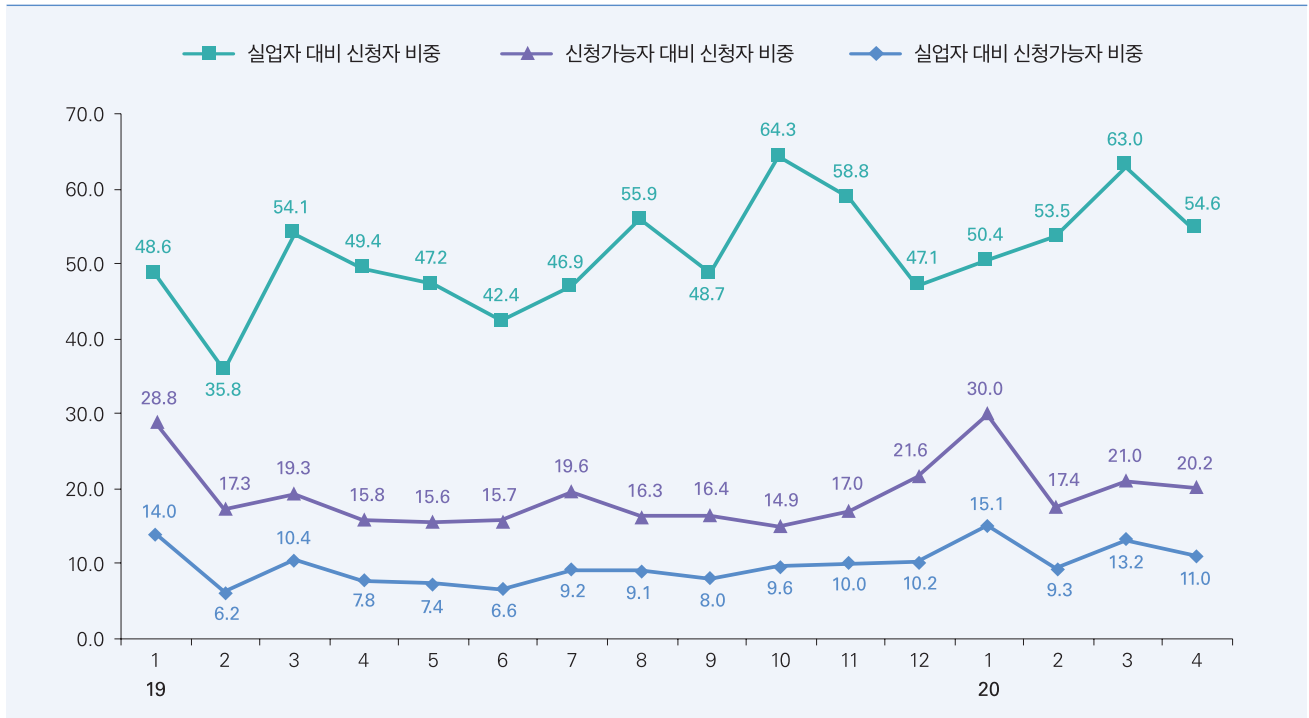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03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특징

-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는 실업자 중 신청가능자 규모의 증가와 함께 실업자의 신청률도 함께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
  - 2020년 4월 기준 실업자 중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는 약 11% 수준이며, 신청가능자 중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4월 실업자는 117만 2천 명으로 이 중 고용보험 적용률과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신청가능자를 추정할 경우, 실업자 중 구직급여 신청가능자는 약 23만 명 수준으로, 실업자 5명 중 1명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sup>3)</sup>
  - 3월의 경우 신청가능자 대비 신청자 비중이 63%를 기록하여, 지난해 10월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2019년 10월의 경우 실업급여 제도개편의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청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sup>4)</sup> 올 3월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노동시장이 전반이 위축되면서 구직급여 신청률이 급증한 것으로 보임

그림 4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비중 추이

(단위: %)



주 | 구직급여 신청가능자는 해당 월 실업자 수에 고용보험 적용률(피보험자 수/취업자 수×100)과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비자발적 상실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100)을 곱하여 임의로 추정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3) 2020년 4월 기준 고용보험 적용률은 51.9%(1,380만 1천 명/2,656만 2천 명),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은 38.8%(20만 6천 명/53만 명)를 적용하였음. 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직할 가능성이 더 높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였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가능자 규모는 과대(또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4) 2019년 10월 1일(이직일 기준)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30일에서 최대 60일(30세 미만)까지 증가하고,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증가하였음. 또한, 일용직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신청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구직급여 신청자의 이직 사유를 보면,

- 1~2월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자가 많은 달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것이라면, 3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이직자의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2 구직급여 신청자의 이직 사유 분포

(단위: %, %p)

		2020년			
		1월	2월	3월	4월
비자발적 사유	폐업, 도산	3.6 (-0.2)	4.6 (0.1)	6.0 (-0.6)	3.9 (-1.5)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0.7 (-5.8)	44.9 (-5.7)	50.3 (1.4)	57.1 (6.8)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2.5 (-0.1)	4.2 (0.3)	3.6 (-0.2)	3.5 (-1.0)
	정년	9.6 (1.5)	4.0 (0.6)	2.2 (0.3)	2.3 (-0.1)
	계약만료, 공사종료	50.8 (4.7)	37.7 (5.0)	33.9 (-0.6)	29.0 (-2.9)
자발적 사유 <sup>3)</sup>		2.7 (-0.1)	4.5 (-0.3)	3.9 (-0.3)	4.2 (-1.3)
기타 <sup>4)</sup>		0.1 (0.0)	0.1 (0.0)	0.1 (0.0)	0.1 (0.0)

| 주 | 1) 구직급여 신청자 중 상시(상용+임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는 전년 동월 대비 비중 증감임

3)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4) 기타는 고용보험 비적용, 이종고용, 분류불능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구직급여 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월 신청자의 70% 이상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자였음
  -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이직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대면 서비스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이들 산업에서의 이직자들의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의 이직 사유 분포(2020년 4월)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폐업,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제조업	2.4 (-2.9)	74.2 (4.5)	3.2 (-1.0)	2.9 (-0.4)	17.3 (-0.3)
건설업	1.2 (-0.2)	65.1 (2.1)	2.9 (-0.4)	0.5 (-0.1)	30.3 (-1.4)
도매 및 소매업	5.3 (-2.2)	73.5 (2.6)	4.0 (-1.3)	1.4 (0.4)	15.8 (0.5)
운수업	1.6 (-0.7)	46.8 (6.2)	7.1 (-2.3)	6.5 (0.0)	38.0 (-3.1)
숙박 및 음식점업	11.9 (-7.5)	70.2 (8.7)	3.4 (-1.7)	0.2 (-0.1)	14.3 (0.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0.0)	63.7 (2.4)	1.9 (-0.3)	3.7 (-0.7)	29.2 (-1.5)
금융 및 보험업	0.2 (-1.6)	29.9 (-4.7)	1.6 (-0.5)	5.6 (2.6)	62.7 (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 (-1.0)	40.8 (3.0)	8.1 (-3.3)	1.6 (0.3)	47.5 (1.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0.2)	58.9 (-0.9)	3.8 (0.2)	1.4 (0.2)	33.5 (0.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5 (-0.6)	53.3 (16.5)	1.8 (-0.7)	1.3 (-0.9)	43.1 (-14.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 (0.0)	2.9 (0.3)	0.6 (-0.0)	2.6 (1.4)	93.8 (-1.6)
교육 서비스업	2.5 (-0.3)	31.6 (11.9)	1.4 (-0.3)	3.1 (-0.4)	61.3 (-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 (-2.3)	52.9 (2.2)	5.7 (-1.9)	1.3 (0.3)	32.0 (1.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6 (0.4)	47.1 (4.1)	3.0 (-0.3)	0.6 (-0.1)	43.7 (-4.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6 (-4.3)	65.9 (7.4)	5.1 (-0.8)	1.1 (-0.3)	22.3 (-2.0)

[주] 1) 구직급여 신청자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상시(상용+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 )는 전년 동월 대비 비중 증감임

3) 산업 비중이 1% 미만인 산업은 표시하지 않았으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9차 분류 기준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04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요인분해<sup>5)</sup>

-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 증가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sup>6)</sup> 이번 장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자료와 구직급여 신청자 자료를 연계하여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2019년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71.7%가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들 중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은 40.7%
  -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의 37.9%가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년 상실자의 11.1%인 75만 3천 명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

표 4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자 추이

(단위: 천 명, %)

	피보험자격 상실자	피보험기간 충족자비율 <sup>4)</sup>	이직사유 충족자비율 <sup>5)</sup>		구직급여 신청자 <sup>3)</sup>
			이직사유 충족자비율 <sup>5)</sup>	구직급여 신청률	
2006년	3,855	71.3	37.3	47.8	490
2007년	4,095	71.3	38.1	48.3	538
2008년	4,401	72.1	41.2	51.0	666
2009년	4,805	68.2	47.2	53.7	831
2010년	5,157	70.0	43.3	48.1	753
2011년	5,444	70.6	42.0	44.7	721
2012년	5,599	71.5	42.6	43.3	739
2013년	5,663	72.0	42.6	43.9	764
2014년	5,896	72.5	42.3	44.0	796
2015년	6,165	72.2	41.3	42.9	789
2016년	6,465	72.5	39.2	42.7	783
2017년	6,570	72.3	38.9	36.6	677
2018년	6,755	72.3	39.8	36.8	714
2019년	6,803	71.7	40.7	37.9	753

| 주 | 1)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

2) 피보험자 중 상시(상용+임시)근로자만 해당

3) 구직급여 신청자수=피보험자격 상실자 수×피보험기간 충족자 비율×이직사유 충족자 비율×구직급여 신청률

4) 피보험기간 충족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5) 이직사유 충족은 피보험기간 충족자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DB-수급자격신청 종합통계DB 연계 자료

5) 이번 장은 박진희 외(2017)의 2장 3절 실업급여 성과 중 일부를 자료추출시점(2020.5.20.)을 기준으로 재작성하였음.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으로 상실자 (상시근로자) 중 구직급여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신청일 및 행정처리일 기준의 신청자 수와 다르며, 자료추출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6) 2019년 기준 상실자 수와 구직급여 신청자 수간의 상관계수는 0.980이었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조건 및 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며, 구직급여 신청자의 80% 내외는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있어, 구직급여 신청자 수의 증가는 동월 상실자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연도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율은 각 요소의 증가율의 합(근사치)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신청자 증가율을 요인분해 해보면, 전반적으로 상실자 증가율이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8년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비자발적 상실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9년의 경우 이직 사유 충족자 비율의 증가가 신청자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상실자의 증가폭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구직급여 신청률의 증가로 신청자가 전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2019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신청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5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요인 분해

(단위: %, 전년 대비)

	상실자 증가율	피보험기간 충족자 비율 증가율 <sup>3)</sup>	이직 사유 충족자 비율 증가율 <sup>4)</sup>	신청률 증가율	신청자 증가율
2006년	6.3	-1.2	0.2	0.6	6.0
2007년	6.2	0.0	2.2	1.1	9.8
2008년	7.5	1.1	8.0	5.5	23.9
2009년	9.2	-5.5	14.8	5.3	24.7
2010년	7.3	2.7	-8.2	-10.4	-9.3
2011년	5.6	0.8	-3.2	-7.0	-4.2
2012년	2.9	1.3	1.5	-3.2	2.4
2013년	1.1	0.7	0.1	1.5	3.4
2014년	4.1	0.7	-0.8	0.1	4.2
2015년	4.6	-0.5	-2.4	-2.4	-0.8
2016년	4.9	0.4	-5.1	-0.6	-0.7
2017년	1.6	-0.3	-0.7	-14.1	-13.6
2018년	2.8	0.0	2.3	0.4	5.5
2019년 <sup>5)</sup>	0.7	-0.7	2.2	3.1	5.4

주 | 1)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

2) 피보험자 중 상시(상용+임시)근로자만 해당

3) 피보험기간 충족자 비율은 상실자 중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실자의 비중임

4) 이직 사유 충족자 비율은 피보험기간 충족자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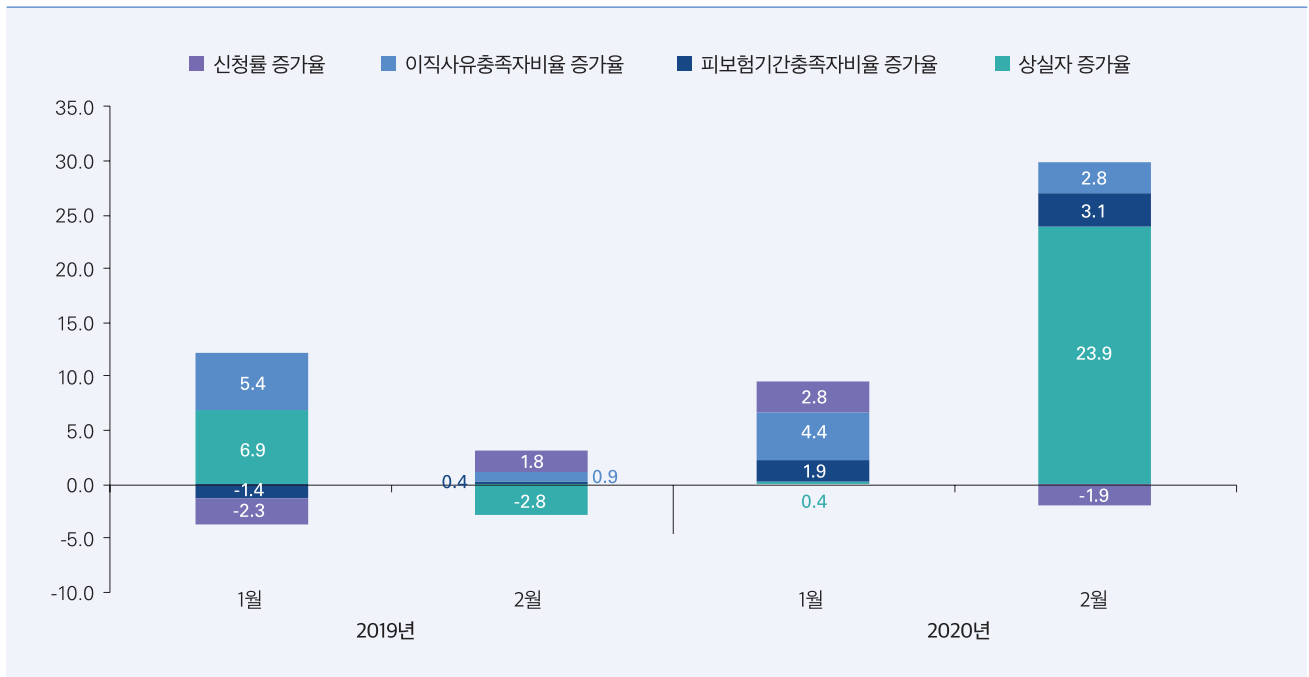
5) 구직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여, 자료추출시점 이후에 신청자가 반영될 경우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DB-수급자격신청 종합통계DB 연계 자료

-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구직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1분기의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을 요인분해 해봄
  - 2020년 2월 기준 상실자 중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을 요인 분해하면 상실자 증가의 영향이 23.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월은 전년보다 업무 일수가 3일 더 많아, 상실 신고된 피보험자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 크게 나타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고용보험통계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로 월 단위 업무 일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월별 증감을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는 비자발적 상실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실자 중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한 피보험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청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의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른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 월별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요인 분해

(단위: %, 전년 동월대비)



| 주 | 1)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

2) 피보험자 중 상시(상용+임시)근로자만 해당

3) 피보험기간 충족자 비율은 상실자 중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실자의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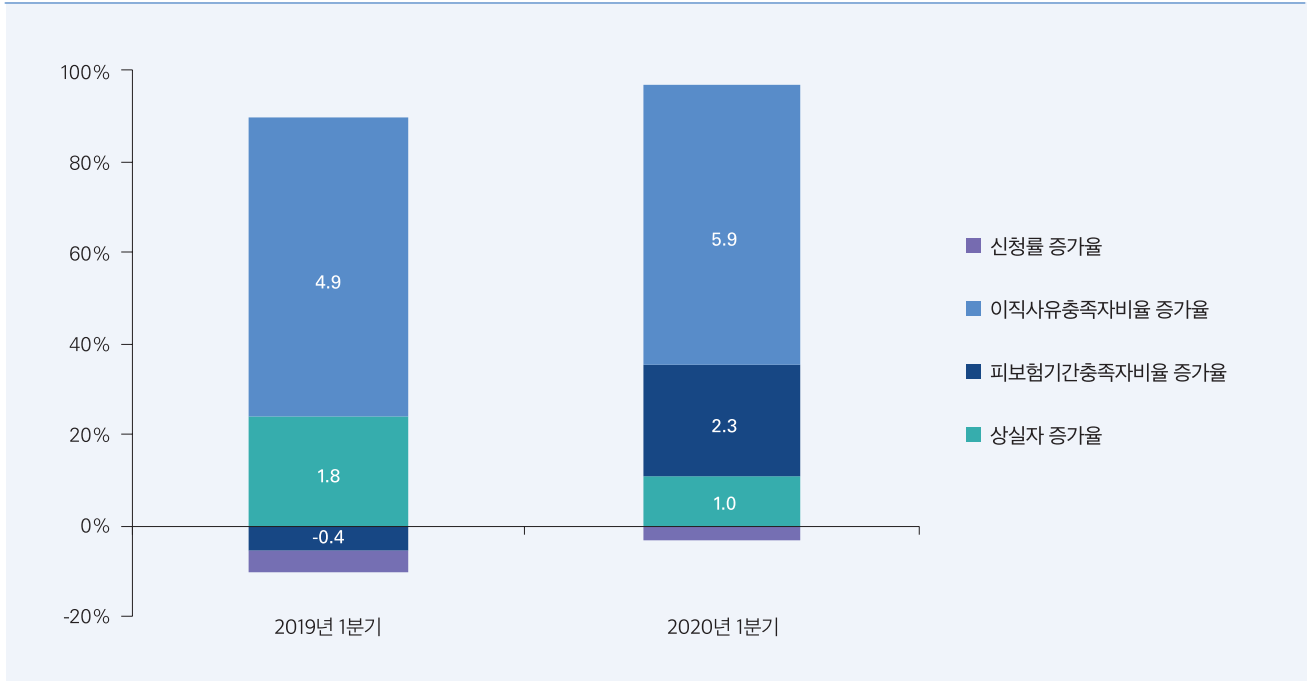
4) 이직 사유 충족자 비율은 피보험기간 충족자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비중임

5) 구직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자료추출시점 이후에 신청자가 반영될 경우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DB-수급자격신청 종합통계DB 연계 자료

그림 6 분기별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요인 분해

(단위: %, 전년 동기대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DB-수급자격신청 종합통계DB 연계 자료

[주] 1)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

- 2) 피보험자 중 상시(상용+임시)근로자만 해당
- 3) 피보험기간 충족자 비율은 상실자 중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실자의 비중임
- 4) 이직 사유 충족자 비율은 피보험기간 충족자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비중임
- 5) 구직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자료추출시점 이후에 신청자가 반영될 경우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 05 맺음말

- 본 고에서는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현황과 증가요인을 살펴보았음
  - 2020년 4월 기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한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2.9% 증가한 12만 9천 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실업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구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4월은 전 기간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은 달로, 구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취업 경로가 막힌 구직자들이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된 모습
  - 구직급여 신청자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 또한, 1~2월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자가 많은 달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것이라면, 3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이직자의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구직급여 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월 신청자의 70% 이상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자였으며,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이직한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음
  - 대면 서비스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이들 산업에서의 이직자들의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되는 등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 상실자 자료와 구직급여 신청자 자료를 연계하여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을 요인 분해 해보았음
  - 그 결과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제도개편으로 인한 신청률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하지만, 2020년 1분기 기준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는 비자발적 상실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이 최근 구직급여 신청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5.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생활 방역을 시작하였으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지속적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면서 당분간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문헌

박진희·윤정혜·최기성(2017),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고용정보원.

## 노동시장 변동 추이와 코로나19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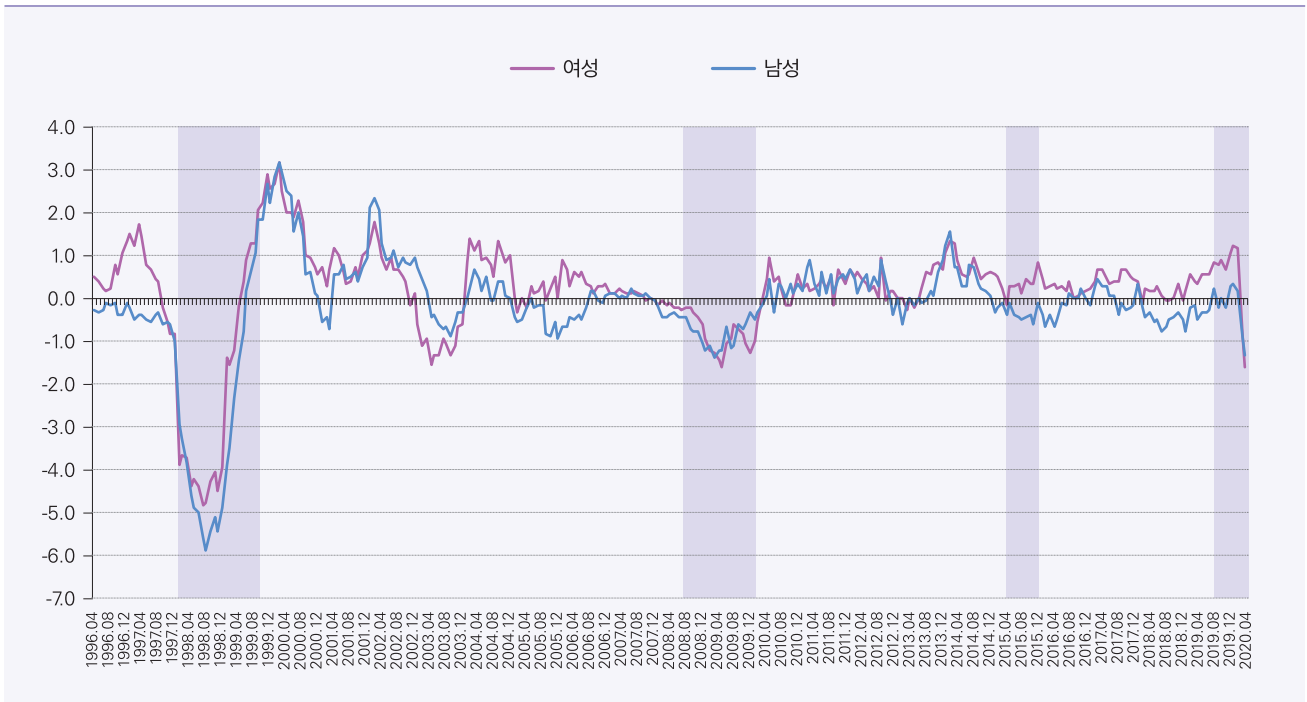
이정아\*

- »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부진이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2020년 3월의 고용률과 취업자가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
  -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IMF 외환위기는 이후의 위기 국면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고용률과 취업자 감소폭은 금융위기 수준을 초과
- » 메르스 확산은 남성 취업자에게만 적은 영향을 끼쳤고 금융위기, 코로나19 확산은 여성 취업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침
  - 2020년 4월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3천 명, 남성은 -183천 명
  - 금융위기 시기에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최대 감소폭은 여성은 -198천 명, 남성은 -69천 명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부연구위원(faith0502@keis.or.kr)

그림 1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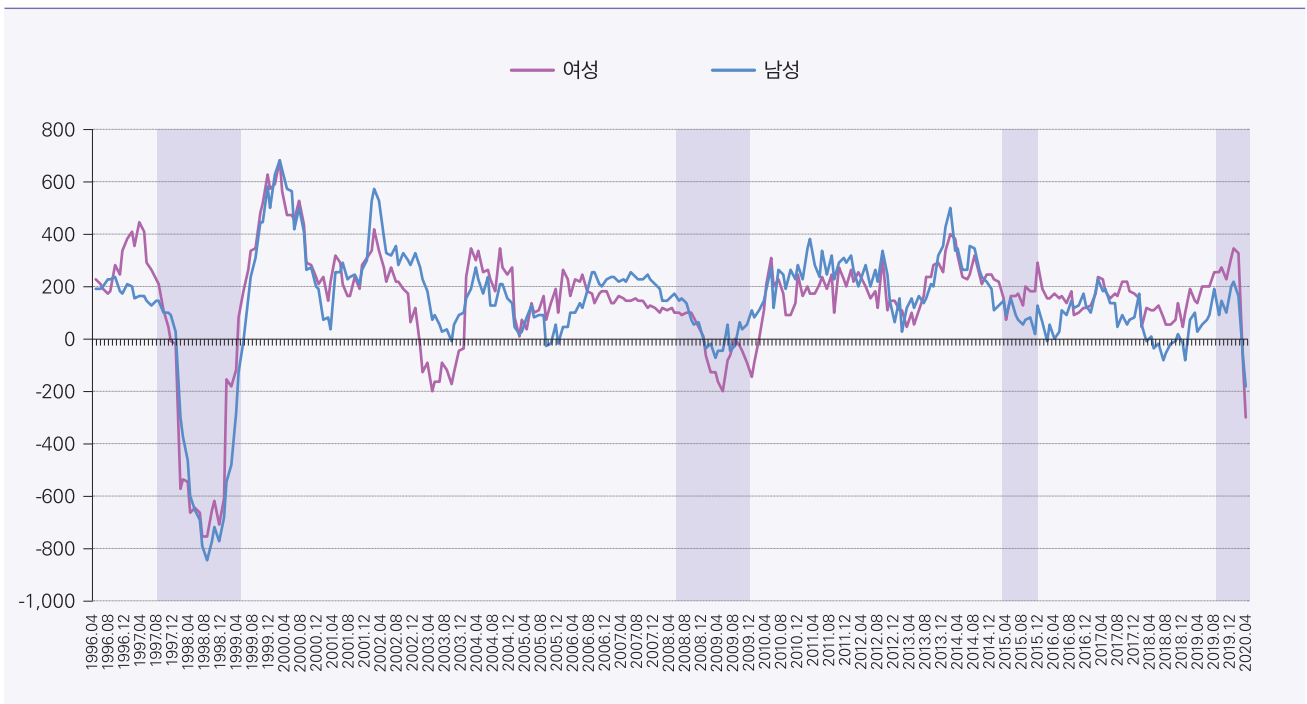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월

| 주 | 음영 범위는 순서대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메르스, 코로나 확산 국면

그림 2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증가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

- 지금까지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때는 2011년 9월 +324천 명
- 2020년 3월에 +1,260천 명, 4월에 +1,130천 명 증가
- 일시휴직자 증가는 여성 취업자 중에서 폭증하고 있는데 2020년 4월 기준 여성 +703천 명, 남성 +428천 명
- 금융위기 때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증가하며 실업자는 감소한다는 점에서 양상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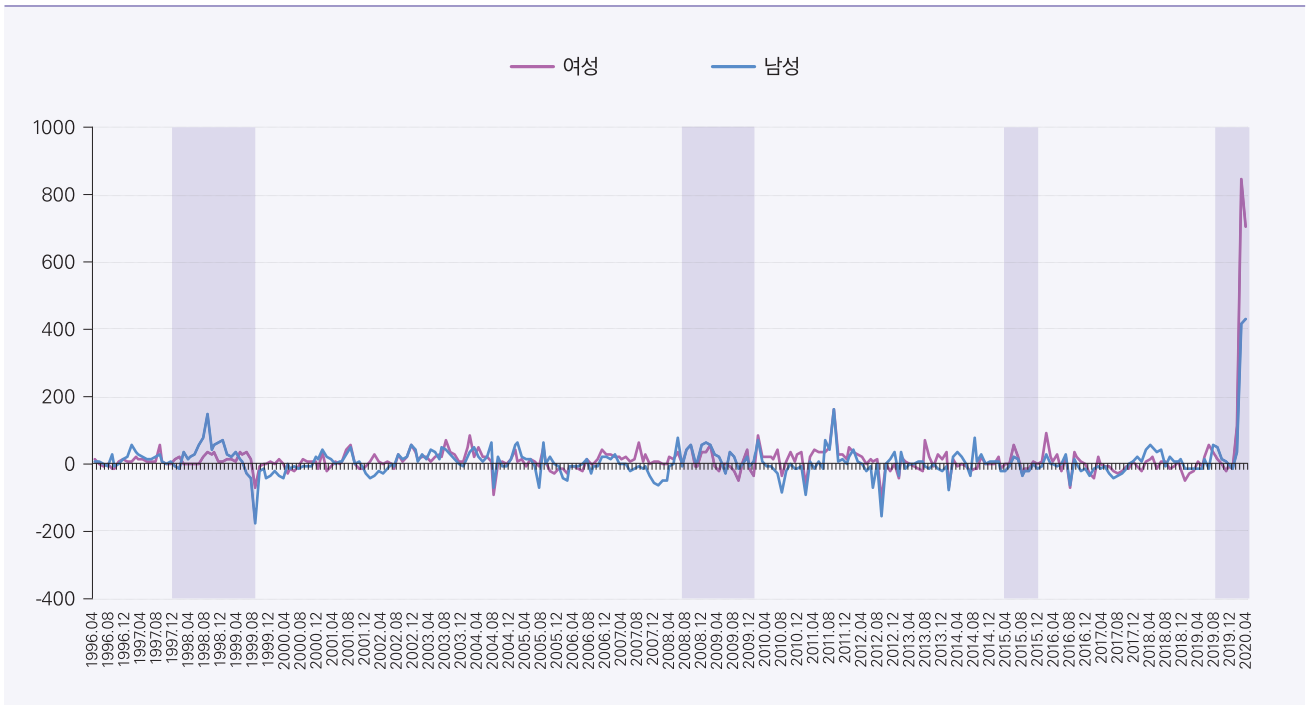
**» 위험 국면에서 이례적인 일시휴직자 증가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할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정책 효과와 코로나19 확산이 가까운 시기에 종식되리라는 기대로 실업자 증가가 지연되고 일시휴직자가 증가하였을 수 있음
- 이전 시기보다 해고보다 일시휴직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용안전망의 확충되었을 가능성
- 또는 취업자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한 대면 서비스업 부문에 영향을 끼쳤는데 대면 서비스업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취업자의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



그림 3 전년동월대비 일시휴직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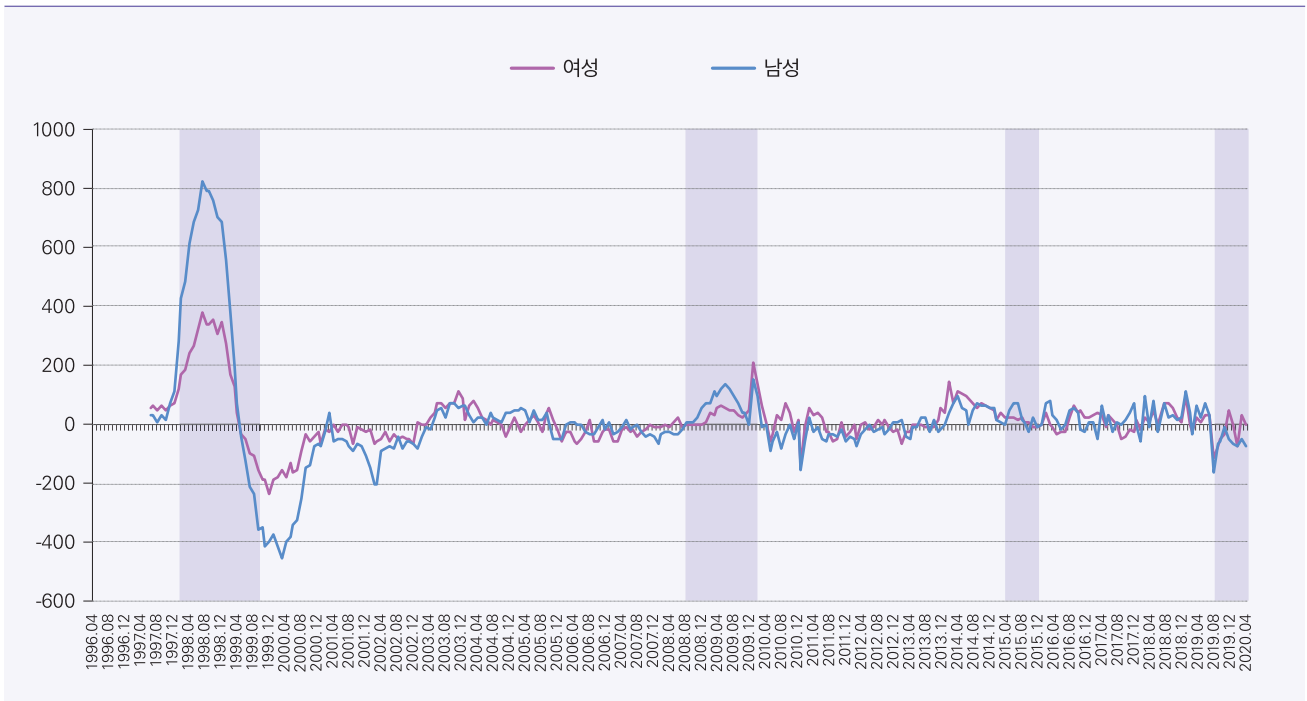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월

그림 4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증감

(단위: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월

표 1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와 일시휴직자 증감

(단위: 천 명)

취업자 증감						일시휴직자 증감					
9차	09년3월	09년4월	10차	20년3월	20년4월	9차	09년3월	09년4월	10차	20년3월	20년4월
A	25	-0	A	134	73	A	3	3	A	4	1
B	0	-1	B	1	-0	B	0	-0	B	0	0
C	-195	-166	C	-23	-44	C	25	9	C	53	82
D	12	-5	D	5	-2	D	0	2	D	1	-0
E	14	11	E	21	21	E	1	1	E	3	2
F	-76	-131	F	-20	-59	F	-6	3	F	33	23
G	-76	-3	G	-168	-123	G	-15	-11	G	76	64
H	-12	-29	H	71	33	H	9	11	H	57	69
I	-52	-115	I	-109	-211	I	-0	-7	I	129	98
J	-24	45	J	-19	-7	J	0	2	J	18	15
K	-60	-83	K	-20	-11	K	-7	-6	K	14	14
L	20	47	L	-0	-37	L	1	-1	L	4	4
M	103	86	M	-27	19	M	3	1	M	3	6
N	-24	-39	N	20	17	N	4	-2	N	45	56
O	70	73	O	-61	-40	O	-6	-10	O	111	105
P	31	39	P	-100	-130	P	-3	-2	P	292	194
Q	135	138	Q	82	77	Q	3	7	Q	286	281
R	22	14	R	9	11	R	1	1	R	68	69
S	-102	-67	S	-32	-99	S	5	-6	S	57	40
T	-2	-6	T	37	30	T	0	0	T	5	3
U	-3	-2	U	4	5	U	-1	-1	U	0	5
계	-195	-198	계	-195	-476	계	19	-5	계	1,260	1,1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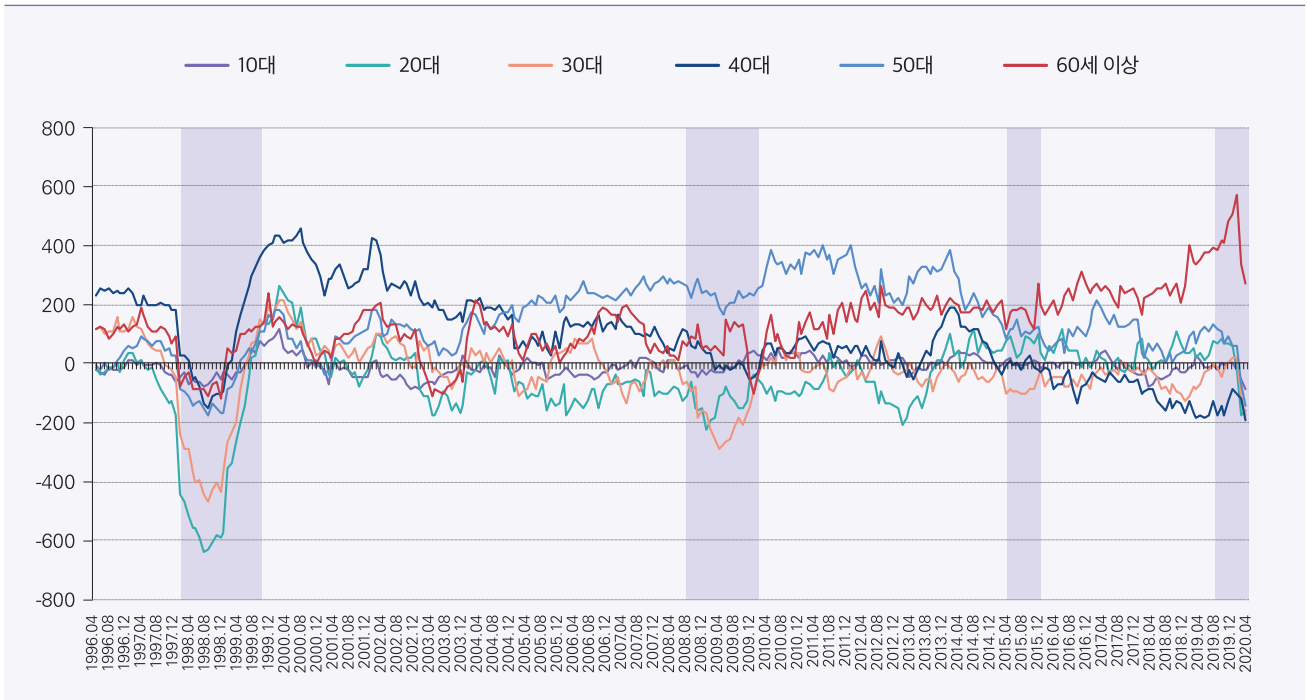
주 | 2009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2020년은 10차 개정 기준 통계이므로 업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이하 알파벳은 9차 개정 분류이며 괄호 안은 10차 개정으로 달라진 분류.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O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U 국제 및 외국기관

»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짐

- 위 네 개 산업은 최근 일시휴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이기도 함
- 취업자는 증가하였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시휴직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
- 코로나19의 확산은 여성 일자리가 집중된 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침
- 금융위기 때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 5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월

»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메르스 확산기와 달리 코로나19 확산기에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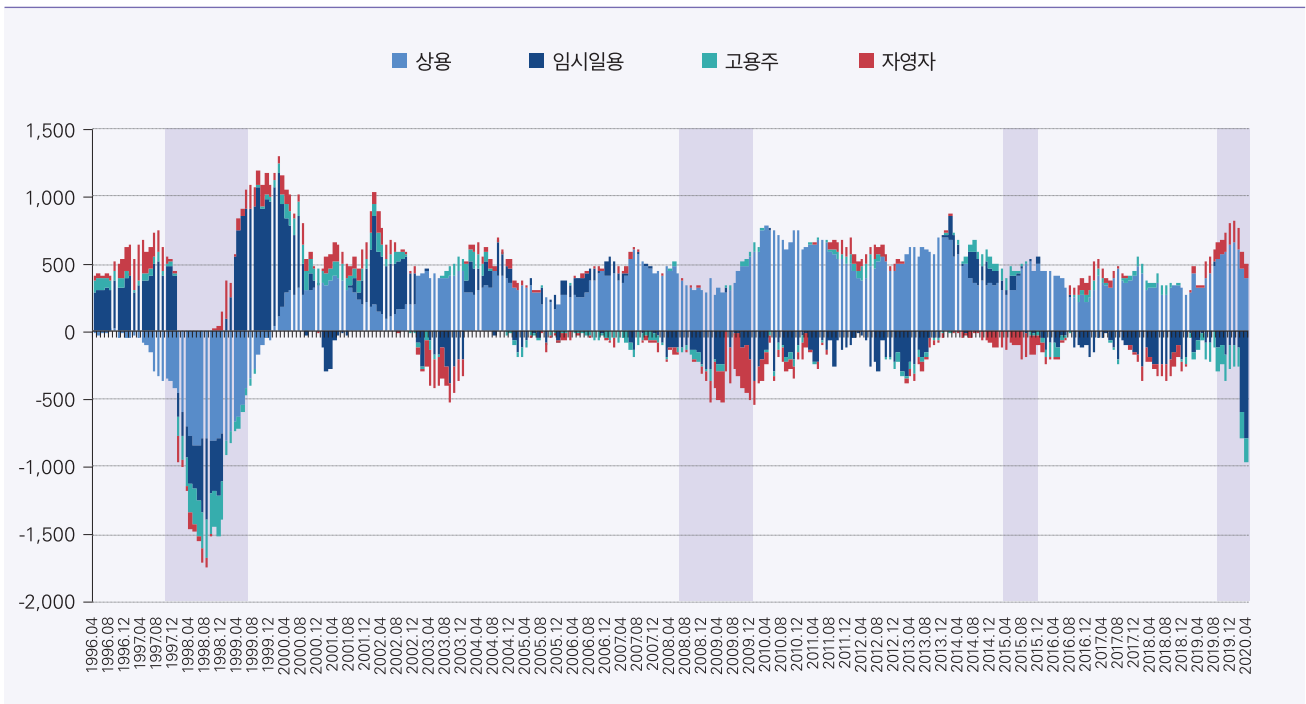
- 30대와 40대 취업자 감소 경향은 2015년부터 지속되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라고 확정적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감소폭이 커졌음

- 20대와 50대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작되었으며 특히 여성 50대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계층으로 보임
- 60세 이상 고령층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둔화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메르스 확산기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일용직 중심의 취업자 감소가 진행

- 외환위기 때에도 임시일용직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상용직과 고용주, 자영자가 모두 크게 감소
- 금융위기와 메르스 확산기에는 자영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고 임시일용직이 큰 폭으로 감소
- 특히 임시일용직 감소에서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임

그림 6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월

»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위험의 산업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동향 브리프

2020

Vol.3

